



100세 시대 !!!

안정된 노후생활, 아직도 고민 중 이신가요?

준비된 삶으로 만들어 가는

농지연금은 어르신의 **안정적인 노후생활**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한 **농지**를 **담보**로 일정한 금액을 **매월 연금방식**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
1. 지급대상자

- ▷ 자격 : **영농경력 5년 이상을 갖춘 만60세 이상인 자**
(2024년인 경우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- ▷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이 **전, 답, 과수원**으로 **실제 영농**으로 이용되는 농지

※ “배우자”는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**만 55세** 이상으로 **가입당시 승계조건으로 가입**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

2. 농지연금 지급조건 :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

- ▷ 농지가격 : ① 개별공시지가 100% 또는 ② 감정평가금액(100%)
- ▷ 부부의 경우,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됨
- ▷ 연금 수급기간 종료 후 정산 : 연금 수령액과 정산시점의 농지 가격을 비교하여 농지승계자의 선택에 따라 정산 실시

3. 연금 수령방식

기 간	종신형/ 경영이양형	정액형 (5년)	정액형 (10년)	정액형 (15년)	정액형 (20년)
가입연령	만 60세 이상	만 78세 이상	만 73세 이상	만 68세 이상	만 63세 이상

4. 농지연금 장점

- ▷ **연금의 안정성** : 정부시행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연금수령 보장
- ▷ **가입농지 경작** : 농지연금으로 가입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의 추가소득도 가능
- ▷ **재산세 감면** :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
- ▷ **평생보장** : 부부 모두 평생 농지연금 보장



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

농지은행부 ☎(055)670-7011 팩스(055)672-8767